NEW YORK STATE OF OPPORTUNITY. | Homes and Community Renewal

KATHY HOCHUL
주지사

RUTHANNE VISNAUSKAS
위원/CEO

이민 신분, 주거 차별 및 임차인 괴롭힘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1. **주거 차별은 무엇을 말하나요?**
   뉴욕주 인권법에 따르면 (1) 특정 보호 특성을 이유로 주거를 임대, 판매, 임차, 융자, 보험 제공, 협상 등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행위, (2) 특정 보호 특성을 이유로 다른 조건이나 조항을 적용하거나 불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장애인이 주거를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규칙, 정책, 관행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4) 차별적인 문구나 광고를 작성, 인쇄, 게시 또는 배포하는 행위, (5) 특정 보호 특성을 이유로 주거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허위로 알리는 행위, (6)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을 방해하거나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특정 보호 특성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거나, 대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다른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 (8) 특정 보호 특성을 이유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9) 권리 구제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2.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뉴욕주 인권법의 적용을 받나요?**
   네. 모든 뉴욕 주민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뉴욕주 인권법("NYSHRL")에 따라 특정 보호 특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여러 지역에는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자체 법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 및 지방 법률 중 한 가지 이상은 출신 국가, 인종, 신념/종교, 피부색, 장애, 성 정체성 또는 표현, 성적 지향, 군 복무 여부, 나이, 성별, 결혼 여부, 가정폭력 피해자 여부, 합법적인 수입원, 체포 예정 상태 또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종결된 특정 유죄 판결, 가족 구성 상태 등에 따른 차별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2022년 12월, 뉴욕주는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보호 대상 계층으로 NYSHRL에 추가했습니다.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이란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으로 정의됩니다.[1] 이민 신분 또는 시민권 신분도 뉴욕시 인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 귀하가 멕시코 출신이라는 이유로 집주인이 아파트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집주인은 귀하의 출신 국가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거주성에 대한 보증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회원님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집주인이 임대료를 다르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경우, 이는 최소한 뉴욕주 법에 따라 불법입니다.

3. **임차인 괴롭힘이란 무엇입니까?**
   뉴욕주법과 일부 지방 법률에서는 집주인 및/또는 집주인의 대리인이 임차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안정화법 및 뉴욕시 지방 법률에 따르면, 집주인이나 그 대리인이

[1] 참고 바랍니다: NYSHRL은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의 확인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NYSHRL은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확인을 근거로 한 불리한 조치가 법으로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불리한 조치가 금지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NY CLS Exec § 292 (2025)를 참조하세요.

임차인의 안락함, 평온함, 휴식 또는 조용한 주거 생활을 방해하거나 침해할 의도로 행위를 하거나, 임차인으로 하여금 해당 주거지에서 퇴거하게 하거나, 임차인이 서면 임대차 계약 또는 기타 임대 계약상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도록 유도하려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겨울철에 난방을 끄거나,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불법적인 임차인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4.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임차인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나요?**
네. 귀하는 적용 가능한 다양한 주택법에 따라 임차인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안정화법은 임대료가 규제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귀하를 보호합니다. 또한 임대료 안정화 대상 세입자인 경우,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이민 신분 정보나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2]

   귀하가 임대료 규제 유닛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NYS Homes and Community Renewal(주택 및 커뮤니티 재개발국)에 아래 번호로 연락하세요. 다른 질문이 있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지역 법률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5. **출신 국가 차별이란 무엇입니까?**
출신 국가 차별이란 조상, 민족 또는 출생지를 이유로 한 주택 차별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공정 주택법은 출신 국가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나 가족이 다른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로 주거 기회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6. **주거 차별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다음 연락처로 연락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인권국
   (Division of Human Rights)
   무료 (888) 392-3644
   TDD/TTY (718) 741-8300
   공정 주택: (844) 862-8703
   홈페이지: http://www.dhr.ny.gov/
   공정 주택 안내서: https://dhr.ny.gov/system/files/documents/2024/04/nysdhr-fairhousing-brochure-2024.pdf

7. **임차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임대료 규제 유닛에 거주하고 있고 임차인 괴롭힘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다음으로 연락 바랍니다.

   NYS 주택 및 커뮤니티 재개발 임차인 보호 부서
   (Homes & Community Renewal Tenant Protection Unit)
   이메일: tpuinfo@hcr.ny.gov
   홈페이지: https://hcr.ny.gov/tenant-protection-unit
   임대료 규제 유닛에 거주 중이 아니고 임차인 괴롭힘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지역 법률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2] 참고 바랍니다: NYSHRL은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의 확인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NYSHRL은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확인을 근거로 한 불리한 조치가 법으로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불리한 조치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NY CLS Exec § 292 (2025)를 참조하세요.